

# 청약철회 요구서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의거, 금융소비자는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청약 철회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본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■ 고객정보

고객명		생년월일	
계좌번호		연락처	

## ■ 청약 철회 대상

**[투자성 상품]**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 상품에 대하여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**7일**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**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**
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
**[대출성 상품]**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 상품에 대하여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**14일**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이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,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청약 철회 대상 상품	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성상품 : 고난도금융투자상품, 고난도투자일임계약, 고난도금전신탁계약, 비금전신탁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성상품 : 신용거래, 증권담보대출
①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	년 월 일
② 계약 체결일	년 월 일

※ 고객은 서면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본인은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 
상기와 같이 청약 철회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\_\_\_\_\_ (인)